

공정위,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연구원(KIET)와 공동, 「카르텔 국제규범화」 관련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硬性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 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슈어러(F. 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지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동 세미나의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F. M. Scherer 美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의 반경쟁적인 유통시장의 지배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후지·코닥 사건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WTO가 경쟁제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 M. Scherer 교수는 국제경쟁정책협정은 각국의 국민복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정책담당자와 무역정책담당자들간의 시각차이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국제경쟁정책규범화 협정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경쟁정책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제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OECD등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F. M.

Scherer 교수는 또한 국제경쟁정책협정은 생산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각국의 복지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OECD 카르텔금지의 및 향후 전망

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은 OECD가 경성카르텔 금지를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소개하고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화와 경쟁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쟁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쟁법을 가진 국가의 기업들은 반경쟁적 행위로 진입장벽을 형성 또는 유지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상이한 경쟁법 체제를 따라야 함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킴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 공정거래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정보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방안으로 정보수집 및 제공협력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해당국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카르텔법의 국제적 집행 강화: 그 이슈와 장애요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신흥식 연구위원은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의 확립과 국제적 협력의 강화는 산업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흥식 연구위원은 또한 각종 개별법령에 의거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은 물론 묵시적으로 조장·인용되고 있는 카르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법령에 의거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논거와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항만을 유지하고 각종 사업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흥식 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쟁법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공정거래법제와 집행방식을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를 우리의 국내거래나 대외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실체규정과 집행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일본에서의 카르텔 정비작업: 집행현황과 시사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히데카쓰 히라바야시(平林英勝) 특별심사부장은 일본에서의 카르텔 집행 강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8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상과 규제완화 작업 추진과정에서 경쟁정책 및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국회는 최근 경쟁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담합행위가 일본 전체에 넓게 퍼져 있으며, 이러한 입찰담합행위는 경쟁일 때보다 가격을 10~20% 정도 상승시킨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찰담합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을 고려, 일부에서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자원낭비와 산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법 적용면제와 시장접근

KIET(산업연구원)의 심영섭 연구위원은 수출카르텔이든 수입카르텔이든 무역을 왜곡하는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적용제외는 경쟁정책적인 판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역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심영섭 연구위원은 경쟁법의 원칙들 가운데에는 차별금지와 약탈적인 남용행위 금지, 필수설비에의 접근 등 무역정책상의 원칙과 합치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경쟁법 적용면제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영섭 연구위원은 경쟁법의 적용면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며, 결국 경쟁법 적용범위의 확대는 시장접근 이슈의 해소를 위한 도구로서 경쟁법의 유용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라운드와 첫단계로 OECD에서 추진되고 있는 카르텔의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경쟁법 적용제외 카르텔을 적극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적용제외만을 유지·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카르텔 조항의 축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부여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